

2026년 경기도 지정형 입주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

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스마트 인프라 기반의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생존율 제고 및 지역창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고자 '26년 경기도 지정형 입주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사업'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6월 5일

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

I

사업개요

1. 사 업 명: 경기도 지정형 입주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사업

- 지원기관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- 주관기관: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
- 사업목적: 스마트 인프라 기반의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생존율 제고 및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
- 모집대상: 가 ~ 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
 - 가.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항공대 BI에 등록된 창업기업
 - ※ 기업부설연구소 : 본점이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받지 않는 기관에 입주한 경우만 신청 가능
 - 나.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기업 중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
 - ※ 설립일 :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
 - ※ 단, 신산업 창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 가능(별첨 2 참조)
 - 다. 신청일 현재 휴업/폐업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

[지원 제외 대상]

- 본 사업에 지원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·지자체·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
-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,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은 경우
- 사업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, 입주기업 보육부담금 미납 업체
- 2025년 KAU BI 사업화 지원사업 미승인 중도 포기 기업
- 공고일 ~ 2026.12.31. 기간 내 퇴거 예정인 기업
- ※ 위반 시 선정 취소,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

2. 지원 규모 및 내용

■ 지원규모: 기업당 2,000천원(정액지급) / 총 4개사 지원

- 자부담 총당 금지: 타 사업 지원금을 본 사업의 자기부담금(자부담)으로 분담 또는 총당 금지

■ 신청방식: 기업당 1개 지원 분야 선택

※ 2026. 10. 31.(토)까지 사업 수행 및 비용 집행 완료 건에 대해서만 지원

※ 기업의 필수 자부담금: 총사업비(공급가액 기준)의 최소 20% 이상 부담

- 모든 지원 분야에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, VAT(부가가치세)는 기업 자부담금으로 미인정
(예시) 시제품 제작 총 사업비(공급가액) 2,500천원: 지원금 2,000천원, 기업 자부담금 500천원

3. 지원 분야(택 1)

지원 분야	세부 내용
시제품 제작	• 사업계획서의 사업 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전문 업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시제품 제작비 ※ 이미 개발·판매 중인 양산품 제작 지원 불가
시험분석	• 기업이 보유한 설비로 진행할 수 없는 시험 의뢰비 - 불량원인 분석, 제품품질 향상, 시험분석 및 성능평가 등 지원
홍보 마케팅	• 국내·외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비 - 전시회/박람회 참가비 · 부스 임차료, 기본 장치비, 전시관 입점료 등 (주최 측에 납부하는 직접 비용) - 홍보·마케팅 외주 제작비 (외부 용역비에 준하여 사용) · 기업/제품 소개서 제작, 제품/포장 디자인 비용, 홍보영상 제작, 홈페이지 제작 등 기타 홍보·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※ 신문, 잡지, 방송, 인터넷 광고 등 사용 불가
지식재산권	• 사업계획서의 사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국내 출원/등록 비용 ※ 지식재산권 :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, 저작권 등 - 대리인 수수료(부가세 지원 불가), 특허청 관납료 등 지원 ※ 대리인 성공보수료, 연차 등록료(유지비) 지원 제외

※ 재료비, 물품(기기) 구입비, 장비 및 공간 임차비, 인건비, 소모성 자재, 사무용품, 기업 단순 판촉물 및 기념품 제작비 등 지원 불가

※ 지원기업 선정 공고 전 집행된 사업비는 소급 적용 불가

※ 환급 대상인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집행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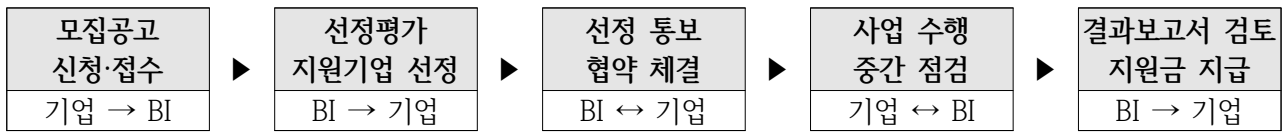
※ 정부 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은 집행 불가 (인지세, 소득세, 취·등록세, 교육세, 농특세 등)

※ 지원 분야에 있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목적 외 사용 불가

※ 각 지원 분야별 진행 내용은 기업의 사업 아이템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함

-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지원 불가, 사업계획 및 지원 분야 승인 없이 임의 집행 불가

4. 지원절차



- ① 신청·접수: 2026. 6. 8.(월) ~ 6. 18.(목)
- ② 선정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: 2026. 6. 19.(금) ~ 6. 25.(목)
- ③ 선정 통보: 2026. 6. 26.(금)
- ④ 사업수행/결과보고 및 중간점검: 2026. 6. 29.(월) ~ 10. 31.(일)/중간점검: 2026. 8. 24.(월) ~ 8. 28.(금)
- ⑤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: 결과보고서 및 집행 증빙자료 제출 기업별 수시 검토 및 지급

※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(2026. 10. 31.)이후 결과보고 건은 인정하지 않음 (지원금 미지급)

- 신청기업 중 적격 여부 검토 후 서면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- 선정기업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화 과제 수행 및 비용 집행
- 사업화 과제 수행 및 비용 집행 완료한 후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, 분야별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
- ※ 지출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(현금영수증과 카드매출전표는 불인정)
- ※ 중개 플랫폼은 직접적 거래처로 인정되지 않으며, 이를 통한 사업비 집행 및 결제는 불인정
-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II

신청 안내

1. 접수기간: 2026. 6. 5.(금) ~ 6. 18.(목) 23:59
2. 접수방법: 한국항공대학교 BI E-mail 접수 (이메일 주소 : bi@kau.ac.kr)
- 메일 제목: 경기도 지정형 사업화 지원_신청기업명
3. 제출서류: 목록 순서대로 1개의 pdf로 병합 제출 (파일명: 메일 제목과 동일)

순번	구분	서류명	비고
1	필수 제출	신청서	[서식 1]
2		사업화 과제 계획서	[서식 2]
3		확약서	[서식 3]
4		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[서식 4]
5		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)	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건
6	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
7	해당 시	2024년 및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1부	
8		2024년 및 2025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	
9		2025년 정량평가 실적 증빙서류 각 1부	해당기업에 한함
10		가점 증빙서류 각 1부	

※ 신청서에 기재하였어도 실적 증빙자료 누락 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

4. 가점 사항 및 증빙서류 : 가점 최대 10점

순번	가점 사항	가점	증빙서류
1	고양시 우수 중소기업	1점	고양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서
2	기술혁신형 중소기업 (Inno-Biz)	1점	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
3	경영혁신형 중소기업 (MAIN Biz)	1점	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
4	벤처기업	1점	벤처기업확인서
5	여성기업	최대 3점	· 여성기업확인서 (3점) · 법인등기부등본/ 주민등록등본(개인사업자) (1점)
6	장애인기업	1점	장애인기업 확인서
7	청년 창업자 (만 39세 이하)	1점	대표자 주민등록등본
8	한국항공대학교 가족회사	1점	협약서 사본
9	기업경영·기술개발·창업벤처 관련 수상 실적	1점	포상, 상훈/표창 증빙
10	입주 기업 중 2025 스타트업 솔루션 밋업 참가기업	5점	참가 관련 증빙
11	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입주기업 (공고일 기준 1년이내)	5점	-

5. 문의처

■ 전화번호 : 02) 300-0402

■ 이 메 일 : bi@kau.ac.kr

III

평가

1. 평가 방법: 요건 검토 후 서면 평가

2. 평가 내용 [평가기준 세부사항_별첨 1 참고]

- 정량평가 (50점) / 정성평가 (50점)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
- 가산점은 최대 10점 부여 (정량·정성 평가 총점 100점에 추가 반영)

구분	평가 내용	배점
정량평가	고용 인원 (대표자 제외)	10
	매출액	10
	투자유치 및 지원 자금 유치 실적	10
	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실적	10
	지식재산권 취득(출원 또는 등록)	5
	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제도 참여실적	5
소 계		50
정성평가	사업 아이템의 우수성	10
	사업화 지원의 필요성	10
	추진계획의 타당성	20
	기대효과	10
소 계		50
합 계		100

※ 특허 실적 인정 기준 : 신청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경우

- 공동 권리인 경우, 권리자 명단에 신청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함 (단, 발명자 명의만으로는 실적 인정 불가)

3. 선정 기준

- 심사위원 평점 고득점순 상위 4개사 대상 기업별 지원금 2,000천원 동일 금액 지급

IV

유의사항

1. 서류 반환 및 수정

-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, 접수 후 임의 수정이나 보완 불가

2. 증빙 및 선정 취소

- 서류 내용에 대한 증빙 요청 시 응해야 하며, 미제출 또는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

3. 사업장 주소지 유지

- 선정기업은 협약 기간 중 본점이 센터 입주 유지 필수, 협약 기간 중 사업장 주소 관외 이전 시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조치 실시

4. 중복수혜 금지

- 타 지원기관(정부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의 동일 사업화 과제 중복수혜 확인 시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

5. 지원금 지급 조건

-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기한 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됨
- 전체 사업비 중도 포기 또는 지원분야 사업비 일부만 승인 없이 집행 시 지원금 미지급
- ※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 시 보완제출 기간 마감 후 제출 건은 미지급

6. 사업 중도 포기 안내

- 사전 승인 필수: 부득이한 사유(경영악화 등) 발생 등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
- 승인 절차: 중도포기 신청(공문 및 사유서 제출) → 주관기관 검토 및 타당성 확인 → 승인 여부 통보 → 사업비 미지급 또는 반납

※ 공식 승인 절차 없이 임의 포기 시 최대 2년간 KAU BI 주관 사업 참여 제한

※ 중도 포기 사유가 '단순 변심'이나 '준비 부족'일 경우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

7. 사후 관리

- 지원기업은 향후 2년간 기업 사업 실적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현장 점검에 협조해야 함

8. 참여 제한

구분	사유	제한 기간	근거
중도 포기	정당한 사유(승인) 없이 사업 중도 포기 또는 사업 일부 임의 집행 등	2년	KAU BI 고양시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기준
부정 수급	허위 신청, 증빙 위조, 중복수혜 등	최대 5년	지방보조금법 제32조

[별첨 1]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지원 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기준

[정량평가]

평가항목	세부평가내용	증빙서류	배점
고용 인원	7명 이상(10점), 4~6명(8점), 3명(6점), 2명(4점), 1명(2점)	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	10
매출실적	5억 이상(10점), 2억 이상~5억 미만(8점), 1억 이상~2억 미만(6점), 5천만 원 이상~1억 미만(5점), 3천만 원 이상~5천만 원 미만(4점), 1천만 원 이상~3천만 원 미만(3점)	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	10
투자 및 지원 자금 유치실적	2억 이상(10점), 1억 이상 (8점), 5천만 원 이상 (6점), 5천만 원 미만 (5점) ※ 실적인정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AC(엑셀러레이터), VC(벤처캐피탈) ※ 실적 제외 : 은행 일반대출, 개인 투자	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	10
창업지원 사업 선정 실적	3건 이상(10점), 2건(8점), 1건(7점) ※ 시·군, 도 및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※ 한국항공대 BI 주관 지원사업 제외	협약서 사본 또는 선정 공문	10
지식재산권 실적	등록 : 3건 이상 (5점), 2건 (3점), 1건 (1점) 출원 : 5건 이상 (5점), 3~4건(3점), 1~2건 (1점) ※ 등록·출원 합산 최대 5점 부여	등록증, 출원사실증명원	5
국내외 시장 개척 실적	2건(5점), 1건(2점) ※ 국내·외 전시박람회 참가	참가확인서	5
소계			50

[정성평가]

평가항목	세부평가내용	배점
사업 아이템의 우수성	사업 아이템의 우수성 및 경쟁력 (5)	10
	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(5)	
사업화 지원의 필요성	사업 추진 필요성 (5)	10
	지원동기 및 지원 분야의 적정성 (5)	
추진계획의 타당성	사업비 예산 사용계획 및 신청 금액의 적정성·타당성 (10)	20
	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(10)	
기대 효과	사업 수행에 따른 매출 성장 및 고용 창출 가능성 (5)	10
	지역 경제 산업 파급효과 (5)	
소계		50

[별첨 2] 신산업 창업 분야

* 신산업 분야 인정 기준

-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1년으로 설정, R&D 과제 협약서의 과제명 및 기술분야가 신산업 분야와 일치하는지 확인, 특허의 IPC 코드 및 권리자 확인 등
- 신산업 분야 해당 여부는 특허(IPC), R&D 수행 실적, 사업자등록증 등을 종합하여 판단.

** 「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」 제2조 제3호 “창업기업”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(신산업창업의 경우에는 10년)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(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*** 「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」 제2조 제2호 “신산업창업”이란 기존 산업을 융·복합하거나 시장성, 파급효과,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, 신산업창업 분야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5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과 같다.

■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[별표1]

신산업 창업 분야(제3조제1항 관련)

①	인공지능
②	빅데이터
③	5G+
④	블록체인
⑤	서비스플랫폼
⑥	실감형콘텐츠
⑦	지능형 로봇
⑧	스마트제조
⑨	시스템반도체
⑩	자율주행차
⑪	전기수소차
⑫	바이오
⑬	의료기기
⑭	기능성 식품
⑮	드론·개인이동수단
⑯	미래형 선박
⑰	재난/안전
⑱	스마트시티
⑲	스마트홈
⑳	신재생에너지
㉑	이차전지
㉒	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㉓	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
㉔	우주
㉕	차세대 원전
㉖	양자
㉗	사이버 보안